모터카 크레인 안전검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보고

서울도시철도

2017. 2.

시 설 지 원 단

[궤도장비팀]

모터카 크레인 안전검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보고

고용노동부 종합진단명령에 따른 모터카 크레인 안전검사 시행 결과,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·시행하므로서 관련법규 준수 및 철도장비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

Ⅰ 관련근거

- ☐ 궤도처-2304('16.10.07)「종합안전진단 관련 개선사항 알림」
- ☐ 시설지원단-17762('16.12.09)「모터카 크레인 안전검사 시행계획 보고」
- ☐ 대한산업안전협회 서울지역본부 16-서울검사팀-1133('16.12.20)「유해·위험기계·기구 안전검사 불합격 통보」
- ☐ 서울지방고용노동청「사용중지명령서」8대
- ☐ 시설지원단-900('17.01.20)「모터카 크레인 안전검사 관련 협조 요청」

Ⅱ 모터카 크레인 안전검사 지적사항

☐ **추진경위**

2016.7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시행한 종합안전보건진단 결과, 모터카 크레인 안전검사 시행 통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시행한 바,

- ❍ 검사일자 : 2016.12.20 / 28
- ❍ 검사기관 : 대한산업안전협회 서울지역본부
- ❍ 대상장비 : 토목 크레인 모터카 8대
- ❍ 검사결과 : 8대 불합격 → 크레인 사용중지명령(서울지방노동청)
- ❍ 지적사항
  - 과부하방지장치 미설치 : 8대
  - 비상정지장치 미설치 : 8대
  - 권과방지장치 미설치 : 4대
  - 훅 해지장치 미설치 : 2대

Ⅲ 지적사항 조치계획

☐ 모터카 크레인 안전검사 지적사항 조치(1차)

가. 지적사항

운용기술사업소	관리번호	지 적 사 항	수량(조)	비고
개화산	511	- 과부하방지장치 미설치 - 비상정지장치 미설치	1 1	
고 덕	512	- 과부하방지장치 미설치 - 비상정지장치 미설치	1 1	
답십리	514	- 과부하방지장치 미설치 - 비상정지장치 미설치 - 권과방지장치 미설치 - 훅 해지장치 미설치	1 1 1 1	
신 내	611	- 과부하방지장치 미설치 - 비상정지장치 미설치 - 권과방지장치 미설치	1 1 1	
마포구청	612	- 과부하방지장치 미설치 - 비상정지장치 미설치	1 1	
도 봉	711	- 과부하방지장치 미설치 - 비상정지장치 미설치 - 권과방지장치 미설치 - 훅 해지장치 미설치	1 1 1 1	
모 란	811	- 과부하방지장치 미설치 - 비상정지장치 미설치	1 1	
천 왕	714	- 과부하방지장치 미설치 - 비상정지장치 미설치 - 권과방지장치 미설치	1 1 1	

나. 지적사항 조치

○ 검사기관에 우리공사 모터카 크레인은 「안전검사 고시 부칙 제2조」에 의거 일부 안전검사 생략(과부하방지장치) 적용 검토 요청

○ 이 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외부정비업체에 제작 및 설치 의뢰

다. 발주계획

○ 건　　명 : 모터카 크레인 안전장치 구매

- 비상정지장치 설치 : 8대
- 권과방지장치 설치 : 4대
- 훅 해지장치　설치 : 2대

○ 입찰방법 : 제한경쟁입찰

- 소상공인간 경쟁입찰

○ 예산과목 : 공공운영비(차량정비 및 검사비용)

○ 소요예산 : 약530만원(부가세 포함)

○ 납품기한 : 계약일로부터 30일(재검사 일정 포함)

□ **모터카 크레인 안전검사(재검사) 시행(2차)**

가. 검사기관 : (사)대한산업안전협회 서울지역본부

나. 검사일자 : 모터카 크레인 지적사항 조치 완료 후

다. 검사내역 : 붙임 참조(안전검사고시 별표2 크레인의 검사기준)

라. 검사장소 : 6개 차량기지 MC선

마. 안전검사 수수료

○ 예산과목 : 사무관리비(검사 및 수수료)

○ 소요예산 : 102,000원(대당) × 8대 = 897,600원(부가세포함)

Ⅳ 행정사항

□ 지적사항 조치 및 안전검사(재검사) 수수료 집행

○ 지적사항 조치 : 재무처 계약의뢰

○ 안전검사(재검사) 수수료 : 검사기관에 직접 납부

□ 1차 및 2차 최종 합격 후 크레인 사용중지 해제 요청 → 서울지방노동처

□ 안전검사 시행 시 해당 기술사업소 직원 입회

○ 안전관리 철저(전차선 주의 등)

V 결 론

□ 상기와 같이 크레인 모터카 안전검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 시행하고,

□ 아울러, 지적사항 조치 후 안전검사(재검사)를 시행하므로서 관련법규 준수 및 철도장비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.

붙임 : 1. 안전검사 고시(별표2 크레인의 검사기준) 1부.
2. 모터카 크레인 안전장치 구매 사양서 1부. 끝.